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43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0.

발 의 자:노웅래·김원이·송갑석

이병훈 · 김두관 · 전용기

정성호・장철민・이수진(비)

오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청년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인데 반해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 장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청년의 정치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 뿐만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, 지역구지방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하도록 하여 장유유서 선거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참고로 OECD회원국 36개 국가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%(하원 기준)이며, 30세 이하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(41.3%), 핀란드(36.0%), 노르웨이(34.9%), 스웨덴(34.1%), 네덜란드(33.3%)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있음.

이에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

8세로 낮추고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(안 제16조제2항).
- 나.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(안 제16조제3항).
- 다.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(안 제188조제1항).
- 라.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(안 제190조제1항).
- 다.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(안 제19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"25歲"를 각각 "18세"로 한다.

제188조제1항 단서 중 "年長者를 當選人으로"를 "추첨으로 當選人을" 로 한다.

제190조제1항 단서 중 "年長者順에 의하여"를 "추첨으로"로 한다.

제191조제1항 단서 중 "年長者를 當選人으로"를 "추첨으로 當選人을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피선거권) ① (생 략) | 제16조(피선거권) ① (현행과 같 |
| | 승) |
| ② 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 | ② <u>18</u> 4] |
| 員의 被選擧權이 있다. | |
| ③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| ③ |
| 이상(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| |
|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| |
| 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| |
| 계속하여 選擧日까지) 해당 지 | |
|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| |
| 등록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| |
| 25歲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 | <u> 18세</u> |
| 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| |
| 의 被選擧權이 있다. 이 경우 6 | |
| 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 | |
| 의 設置・廢止・分割・合併 또 | |
| 는 구역변경(제28조 각 호의 | |
|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| |
| 포함한다)에 의하여 중단되지 | |
| 아니한다. |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
| 第188條(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| 第188條(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|
| 決定・公告・통지) ① 地域區 | 決定・公告・통지) ① |

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選舉 區選舉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 議員地域區에서 有效投票의 다 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 定한다. 다만, 最高得票者가 2 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 選人으로 決定한다.

② ~ ⑦ (생 략)

第190條(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| 寛 인의 결정・공고・통지) ① 地 域區市・道議員 및 지역구자치 구・시・군의원의 選擧에 있어 イト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(지역구자치구 ·시·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 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 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. 다만,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 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 을 決定한다.

②·③ (생 략)

選人의 決定・公告・통지) ①|

| <u>人슬</u> |
|-------------------|
|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|
| 第190條(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|
| 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①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<u>추</u> |
| |
| |
| |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第191條(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 | 第191條(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 選人의 決定・公告・통지)

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 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,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 다만,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<u>年長者를</u> 當選人으로 決定한다.

②·③ (생 략)

| 추첨으로 |
|--------------|
| 當選人을 |
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